

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9조의 제목 “(사용료의 감면)”을 “(사용료의 징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별표 2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안 제24조 중 “제24조”를 “제23조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19조(사용료의 감면) 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① ~ ③ (생 략)</p>	<p>제19조(사용료의 징수 등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①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별표 2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② ~ ④ (개정안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)</p>
<p><신 설></p>	<p>제24조(운영지원)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24조(운영지원) ----- 제 23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